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맹본부 규모별 협의 기준 차등 설정〉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12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한홍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1. 16.
- (3) 회 부 일 : 2026.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
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
의 부담을 고려하러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를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
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
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
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주제 등
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
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
주제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29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 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 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 청한 경우에는 <u>협의 횟수·주 제</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 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 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 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 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 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법률 제2129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계약을 맺은 가 맹점사업자의 수 또는 가맹본 부의 매출액 규모별 협의 횟수 · 주제</u>-----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 2026년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4항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동 규정에 따라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이 증가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 등 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

○ 특히,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

- 참고로, 가맹사업에서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1)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4항·제6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업종별 규모에 따른 브랜드 분포 현황>

가맹점 수	외식			서비스			도소매			전체		
	개수	비중	23년	개수	비중	23년	개수	비중	23년	개수	비중	23년
100개 이상	314	3.2	3.1	138	7.1	7.6	43	7.5	7.1	495	4.0	4.0
10개~99개	2,199	22.3	22.4	534	27.6	29.5	152	26.6	26.4	2,885	23.3	23.7
10개 미만	7,360	74.5	74.5	1,261	65.2	62.9	376	65.8	66.6	8,997	72.7	72.3
계	9,873	100		1,933	100		571	100		12,377	100	

※ 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4. 9.)

□ 이에 개정안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시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별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가맹본부 규모에 따라 협의의 기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가맹본부의 협의 대응에 따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은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동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정보공개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관련한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상매출액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대규모 가맹본부에 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²⁾

□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수나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상시 변동되는 사항으로, 이를 기준으로 협의 의무의 범위나 수준을 달리할 경우 협의 기준이 빈번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아울러, 중·소규모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일수록 가맹점사업자 단체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단체 가입에 따른 불이익 발생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³⁾, 협의 기준을 과도하게 축소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협의권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 완화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3)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 단체 가입률은 ‘대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일수록*, ‘계약유지기간이 오래된’ 가맹점주일수록** 높게 나타남.

* 가맹점 100개 이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38.9%, 100개 미만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14.3%

** 최초계약 체결일이 14.02.14 이후인 가맹점주: 33.1%, 이전인 가맹점주: 46.1%

또한, 가입에 따른 불이익 발생률은 ‘소규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일수록 높게 나타남

* 100개 미만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22.6%, 가맹점 100개 이상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13.9%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4. 12. 27.)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나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지속 변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따라 협의 기준·절차를 달리하는 것은 업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통해 협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바, 향후 동 제도의 시행 경과를 충분히 살핀 후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